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가. 투자자문의 대상

주식회사 오에프투자자문(이하 "회사")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증권 및 파생상품
- (2) 기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투자 대상 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 대상 자산

나. 투자자문의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 대상 자산(이하 "투자자문자산")에 관한 투자자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2)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3) 자산 분석 및 가치 판단에 관한 사항
- (4) 투자자문자산의 매매가 필요한 경우 그 수량, 가격, 방법, 시기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 (5) 기타 상기 업무에 관련된 부수 업무

다. 투자자문자산액의 산정방법

투자자문자산액의 산정은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합의한 금액을 그 투자자문자산액으로 봅니다.

라. 투자자문의 제공방법 및 시기

- (1)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회사는 유무선 통신,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SMS) 전용 어플리케이션[에브리톡] 등의 방식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2)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자산의 구성이나 규모 및 고객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투자자문을 회사는 유무선 통신,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SMS) 전용 어플리케이션[에브리톡] 등의 방식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3) 투자자문은 계약기간 완료 전까지 1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시점에 투자자문을 제공합니다.

마.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사전 통지

회사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2. 투자자문업무의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가. 일반적인 기준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성실한 자문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준수
- (2) 전문적인 조사분석에 의한 합리적인 투자자문
- (3) 고객의 자산상태, 투자목적 및 위험수용 정도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관리
- (4) 일관성 있는 투자자문 추구
- (5)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나. 일반적인 절차

회사가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따르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체결 전 투자자문 상담 및 투자 권유

고객이 회사에 투자자문서비스를 요청하면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 목적, 투자자문자산 규모 등 투자성향을 파악한 후 회사의 투자자문계획을 설명하고, 계약체결 전에 고객에게 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를 교부합니다.

- (2) 투자자문계약 체결

고객과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서를 교부합니다.

- (3) 투자자문업무 수행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내용과 고객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투자자문보고서 제공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 후 필요시 투자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합니다.

(5) 투자자문계약 종료

투자자문계약의 목적 달성,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고객의 요청 등의 사유에 의하여 투자자문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문업무를 종료합니다.

3. 투자자문업무 수행 담당자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문업무 수행 담당자 목록

성명	주요경력	전문인력 해당사항
이태엽	세인트존스(뉴욕) 졸업 現 오에프투자자문 자문역 한국투자증권 前 씨드투자그룹 대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금융투자협회 등록	Y

나. 계약체결일 현재 위 투자자문업무 수행 담당자들은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

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기준 및 절차

- 가.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 나.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 다. 회사는 나.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라. 만약 나.항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투자자문업무의 수행을 중단합니다.

5. 회사 및 고객의 의무와 책임

- 가.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금

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5) 투자자문에 응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나. 투자결과의 귀속 및 고객의 책임

- (1) 고객은 투자자문자산의 변동,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및 그 밖에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는 투자의 성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투자는 고객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의 투자자문으로 발생한 투자결과에 따른 책임과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3)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투자자문의 내용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4)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자문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비밀유지 의무

- (1) 고객과 회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를 투자자문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자문 성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성과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 고객 또는 회사가 법원,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비밀유지의무는 투자자문계약의 종료와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6.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투자자문계약에 의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합니다.

- (1)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이하 "투자자문 수수료")로 투자자문계약서에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선취합니다.
- (2) 고객은 투자자문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 입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고객은 투자자문 수수료를 투자자문계약 체결 당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당일까지 투자자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그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경우,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한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 (5) 위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고객은 양 당사자간 별도 사전 합의에 따라 투자자문 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

약철회등")가 가능한 투자자문계약에 한하여 고객이 계약서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투자자문서비스가 늦게 제공된 경우에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공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투자자문 수수료를 반환합니다.

(1)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수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고객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 등의 공급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의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투자자문 수수료를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투자자문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실사 및 감정평가 등 제3의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고객과 회사는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비용은 투자자문 수수료와는 별도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7. 회사의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임원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임원과 그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위	주요경력	비고
김명숙	대표이사	1999~2005 새마을금고 2010~2013 신한은행	X
채수창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03 ~2014.02 서울 강북경찰서 서장, 서울 강북강계양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 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김제경찰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강북경찰서, 전라남도경찰서, 화순경찰서 근무 • 2013.03 풍덩예술학교 대표 • 2018.02~지구촌안전연맹 대표 	X

(2) 위 임원은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나. 대주주에 관한 사항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김명숙	10,800주	10.80%	X
김은숙	40,540주	40.54%	X
신종미	48,660주	48.66%	X
합계	100,000주	100%	

위 주주들은 과거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